

##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5판

P. 125 정정 3) 라. i) ii)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의 상표 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체상표 5장 이하, 홀로그램 또는 동작상표 2장 이상 5장 이하, 기타 시각적 상표 5장 이하의 상표 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

P. 171 [제77조]

정정 전	정정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당한 사유

P. 336 정정 3. 출원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37 정정 (4) 요지변경. 나.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46 정정 4. 출원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85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제2조 제1호 <u>카</u> 목】 보충적 일반조항	【제2조 제1호 <u>파</u> 목】 보충적 일반조항

P. 387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u>카</u> 목 과 동시적용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u>타</u> 목 과 동시적용 여부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